

물질안전보건자료

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제품명	Kixx D1 C2 5W-30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작성부서	최초 작성일자	최종개정일자	개정횟수
윤활유기술개발팀	2017-01-10	2017-01-10	0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 : Kixx D1 C2 5W-30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권고용도 : 디젤 내연기관유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공급회사명 : GS칼텍스(주)
- 주 소 :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(역삼동)GS타워
-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 : 02-2005-6841~8
- 담당부서 및 연락처 : GS칼텍스 윤활유기술개발팀 02-2005-6841~8

2. 유해 위험성

가. 유해 위험성 분류

- 분류되지 않음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- 그림문자 : 없음
- 신호어 : 없음
- 유해 위험 문구 :
GHS 기준하에서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
- 예방조치 문구
 - 예방
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
 - 대응
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
 - 저장
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
 - 폐기
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

다. 유해.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: 자료없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번호	함유량(%)
1)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 (Distillates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)	수화된 증류, 중 파라핀	64742-54-7	70.0~80.0
2) 첨가제혼합물	없음	혼합물	10.0 ~ 15.0

3) 점도지수향상 첨가제	없음	혼합물	10.0 ~ 15.0
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--------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
- 즉시 다량의 깨끗한 흐르는 물로 수분동안 씻어낼 것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
- 비누와 물로 피부를 철저히 씻고 오염된 옷은 세탁할 것.

다. 흡입했을 때 :

- 호흡기 장애, 또는 이상증세나 이상기미가 보이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, 환자를 옮긴다.
- 신선한 장소로 옮겨도 증세가 지속되면 의사에게 데려갈 것.

라. 먹었을 때 :

- 의식이 있으면 물이나 우유를 먹이고,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된다.
- 의사의 지시없이 구토를 시키지 말고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데려갈 것.

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 :

- 눈과 피부에 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며, 먹었을때 두통, 구토, 설사등이 생길 수 있음.

바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:

-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,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소화제

- 적절한 소화제 : 물분무, 포말, 분말소화제, 이산화탄소
- 부적절한 소화제 : 고압 물분사
- 대형 화재 시 : 분무주수, 무상주수, 일반 폼약제를 사용한다.
위험하지 않으면 용기를 화재 위험지역으로 옮긴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열분해생성물 :
- 일산화탄소, 유독 탄소화합물, 기타 분해생성물
- 화재 및 폭발 위험 :
-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.

다.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
- 진화시 공기 호흡장비 및 적정소방장비를 이용한다.
-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, 진화를 시도한다.
-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물 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킨다.
-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킨다.
-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관계인 이외의 접근을 막고, 위험 지역을 격리하면 출입을 금지한다.
-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한다.
- 탱크,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인 경우 : 대피반경 : 0.8km
-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 할 것.
-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.
-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물 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.
- 방호 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려야 함.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:

- 흡입 및 피부 접촉을 피함.
- 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 하며 침투되지 않는 재질로 만든 장갑과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.
- 열, 화염,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.
- 발화원을 제거 할 것.
-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 시킬 것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

- 오일과 반응하지 않는 흡착제를 이용하여 누출된 오일을 흡수시켜 처리하고 지하수나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.
- 법규 허용량 이상의 오염 시 즉시 해당관청에 신고한다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 :

- 누출지역을 차단제나 모래 등으로 차단하고 스키머나 흡착제로 제거한다.
- 폐수는 적절한 폐수처리법으로 처리할 것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 :

- 다른 제품과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,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는 곳이 없도록 밀봉할 것.
- 장기간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입으로 빨아서 옮기지 않도록 한다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(피해야 할 조건 등) :

-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고온에 노출되는 기간을 최소화시킬 것.
- 인화성 액체 및 혼합 금지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.
- 수분 및 이물질의 오염을 피할 것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1) 하이드로처리된 중 파라핀 증류액 (Distillates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)

- 국내 규정(산업안전보건법) : 자료없음
- ACGIH 규정 : 자료없음
- OSHA 규정 : 자료없음
- NIOSH 규정 : 자료없음
- AHIA 규정 :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
2) 첨가제혼합물

- ACGIH 규정 :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
3) 점도지수향상제

- ACGIH(미국) : TWA(5mg/m³)
- OSHA(미국) : TWA(5mg/m³)
- NOHSC(호주) : TWA(5mg/m³, 8hr)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

- 국소배기,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하되,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방폭설비로 할 것.
-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.

다. 개인 보호구 :

○ 호흡기 보호 :

-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("안" 마크)을 필할 것.
-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
- 호흡보호구는 최소 농도로부터 최대 농도까지 분류됨.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.

○ 눈 보호 :

- 비산물,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며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.
-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할 것.

○ 손 보호 :

- 침투되지 않는 재질로 만든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.

○ 신체 보호 :

- 유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침투되지 않도록 고무, 폴리에틸렌, PVC, 니트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안전화, 보호의, 앞치마를 착용하고,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 복을 착용할 것.

9. 물리·화학적 특성

가. 외관 : 물리적 상태-액체(점성), 색상-노란색

나. 냄새 : 석유계 화합물의 냄새

다. 냄새 역치 : 자료없음

라. pH : 해당 없음

마. 녹는점/어는점 : 자료없음. 상온에서 액상.
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280℃ 이상

사. 인화점(COC) : 229℃ 내외

아. 증발 속도 : 자료없음

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 : 해당없음.
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: 자료없음

카. 증기압 : 자료없음

타. 용해도 : 자료 없음

파. 증기밀도 : 자료없음

하. 비중 : 0.861

거. N-옥탄올/물 분백계수 : 자료없음

너. 자연발화 온도 : 자료없음

더. 분해 온도 : 자료없음

러. 점도 : 12.07cSt(100℃)

- 다. 생물 농축성 :
 - 생분해성 : 생물학적 축적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함유함
- 라. 토양 이동성 :
 - 오일 성분이 수중에 부유하다가 토양으로 이동할 수 있음.
- 마. 기타 유해 영향:
 - 자료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방법 :
 - 폐유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것.
위탁처리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, 재활용을 받은자이어야 하며,
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,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
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.
- 나. 폐기시 주의사항 :
 -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므로 이를 금함.
해당 물질을 보관하고 있던 용기도 법규에 의한 폐기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유엔 번호 : 해당없음.
- 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해당없음
-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
- 라. 용기등급 : 해당없음
- 마. 해양오염물질 : 해당없음
-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 -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없음
 -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 - 작업환경측정물질 : 해당없음
 - 관리대상유해물질 : 해당없음
 - 노출기준설정물질 : 해당없음
- 나.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-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위험물 제 4류 제 4석유류
-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폐기물관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됨.
-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

- 한국산업안전공단
- 당사연구소
- KOSHANET (안전보건정보서비스)
- 산업안전보건법
-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(GHS), First revised edition, United Nations
- EINECS(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)
- ACGIH(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Safety and Health)
- IUCLID Dataset

나. 최초 작성 일자: 2017.01.10

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: 0 회

라. 기타

: 상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술된 내용은 GS 칼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, 작성일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사료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